

다문화가족의 특수성과 해체 시 친권자결정

연구책임자 : 박진근

사단법인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연구 요약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은 단순노동을 목적을 한 이주에서 시작하여 이주방식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즉 결혼이라는 안정적인 이주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결혼이민자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외형적 국제결혼의 증가는 과거 전통적인 한국의 가정에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다문화가족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해체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서 출생한 자녀에 관한 문제는 미래의 우리사회를 책임질 주체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법학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해체시 친권과 양육권의 결정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자녀의 복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결정할 때에 고려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구성이 여성결혼이민자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그러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저개발국가에서 이주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결혼경로로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경우라는 점이다. 넷째, 이들의 가정경제가 혼인 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여성결혼이민자는 가정 내의 법적 지위조차 불안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양육자를 부모 중에 모로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다문화가족의 해체될 때에 자녀는 부모 중에 부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양육자를 부모 중에 모로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다문화가족의 해체될 때에 자녀는 부모 중에 부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하락에 더하여 외국인출신이 처한 상황은 그들의 경제적

하락을 한층 더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부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 등을 고려하여 모로 지정하는 것이 자의 복리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반드시 모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민법의 범위 내에서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의 증가와 다문화가족의 해체(즉 다문화부부의 이혼) 시에 다문화가족에서 출생한 자녀의 보호 문제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의 실증적 접근을 위해 다문화가족의 증가원인과 그 증가원인 중에서 해체원인이 되는 사항을 분석하였으며,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다문화가족의 해체에 있어 일반 한국가정의 해체와는 다른 특수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다문화가족의 해체 시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부모 중에 누구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가. 연구의 내용	2
나. 연구의 방법	2
II. 다문화가족의 성립	4
1. 국제결혼 및 외국인 아내의 증가	4
2. 국적별로 분석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6
3.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어려움	11
가. 여성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11
나. 경제의 빈곤화	13
다. 문화적 갈등	16
라. 자녀교육의 어려움	17
III. 다문화가족의 해체(이혼)의 특수성	20
1. 이혼의 증가	20
가. 다문화가족 부부의 이혼	20
나. 국적별 이혼	21
다. 동거기간별 이혼	22
라.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	23

2. 이혼의 원인	24
가. 지역별 이혼원인	25
나. 성별 이혼원인	26
다. 체류기간별 이혼원인	28
라. 출신국별 이혼원인	29
3. 한부모가정의 어려움	31
가. 경제적 어려움	31
나. 심리적·정서적 문제와 자녀양육의 문제	32
다. 사회적 인식의 문제	33
IV. 다문화가정에서의 친권·양육권의 결정	35
1. 친권·양육권의 본질	35
가. 친권·양육권의 의의	35
나. 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양육권행사	36
2. 부모의 이혼시 법률규정	37
3. 친권·양육권행사자의 지정기준과 방법	38
가. 자의 복리를 위한 지정기준	38
나. 지정방법	39
V. 마치며	42
■ 참고문헌	45

표 차 례

<표 1>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추이	5
<표 2> 결혼이민자의 혼인상태별 현 배우자 만난 경로	7
<표 3>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별 현 배우자 만난 경로	9
<표 4>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여성의 국적별 혼인인구	10
<표 5>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별 가구소득	13
<표 6>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가구소득	15
<표 7>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21
<표 8> 국적별 외국인과의 이혼건수 및 구성비	21
<표 9>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평균 동거기간	23
<표 10> 외국인과의 이혼 당시 20세 미만 자녀 유무별 이혼(2008년)	24
<표 11> 이혼·별거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별 이혼·별거 이유	25
<표 12> 이혼사유별 외국인과의 이혼	26
<표 13>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별 이혼·별거 이유	28
<표 14>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가구소득	29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세계화를 추진하게 되어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결혼에 의한 외국인도 증가하게 되고 그 부작용도 발생하게 되었다. 단순노동을 목적을 한 이주에서 시작하여 이주방식의 질적 변화가 결혼이라는 안정적인 이주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결혼이민자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차원의 노력은 2004년을 기점으로 가속화되어 비이주국가에서 이주국가로 변모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2004년 국적법을 개정하였고, 2005년 출입국관리법 개정 및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신분보장을 위한 여러 대책이 마련되었다. 나아가 최근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 외국인 등의 처우기본법, 차별금지법 및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각적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 관련 법률안이 구상되고 있다.¹⁾

외형적 국제결혼의 증가는 과거 전통적인 한국의 가정에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다문화가족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증가를 가져왔다. 국내 초·중·고교에 다문화가족자녀는 2005년 6,121명에서 2006년 4월 7,998명으로 늘어나, 불과 한해 만에 30.6%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0년에는 20세 이하 인구 3명중 1명이 다문화가족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한다.²⁾

1) 정혜영, 다문화가족자녀의 권리보호, 안암법학 27호, 2008. 9, 3-4면.

2) 중앙일보 2006년 4월 4일자.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은 다문화가족의 성립과 유지단계에서는 일정한 기여를 하지만, 다문화가족의 해체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서 출생한 자녀에 관한 문제는 미래의 우리사회를 책임질 주체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법학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본 논문에서는 민법의 범위 내에서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의 증가와 다문화가족의 해체 시에 다문화가족에서 출생한 자녀의 보호문제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증가원인과 그 증가원인 중에서 해체원인이 되는 사항을 연결하여 분석한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이혼으로 연결된다는 점과 다문화가족의 해체에 있어 일반 한국가정의 해체와는 다른 특수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다문화가족의 해체 시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부모 중에 누구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나. 연구의 방법

이를 위하여 기존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이론을 구성하며, 관련된 판

례를 적용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이혼할 때에 자녀의 합리적인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함을 도모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해체시 합리적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에 대한 문헌 및 판례 등을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여 종래의 문헌조사방법에 따라 연구한다.

II. 다문화가족의 성립

1. 국제결혼 및 외국인 아내의 증가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인주민의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8년 외국인 주민은 722,686명으로 2006년 536,627명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과 비교하여 외국인 주민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국제결혼이주자 및 자녀가 증가한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98년 이후에 우리나라 총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아래의 10년간의 통계 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8.2%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결혼 비율은 1998년 3.2%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5년 13.6%까지 증가하였다가 2007년 11.1%, 2008년 11.0%로 약간 감소하였다. 2008년도 현재에는 총 결혼한 부부 중에서 11%정도가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족이 성립함으로써, 2003년도 이후에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족이 많이 성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국제결혼 비율은 2005년 2,885건으로 35.9%, 2006년에는 3,525건으로 41%를 차지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10년간 국제결혼 건수는 266,195건이며,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94,085명(5.9%)이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72,110명(2.2%)으로 나타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 국제결혼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라에서의 다문화가족은 한국 남성이 외국여성과 혼인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2배 이상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90년도 초반에 비해 2000년대 후반으로 들어설수록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1992년의 국제결혼 건수가 5,534건이었다면 2008년에는 36,204건으로 증가하여 국제결혼이 6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결혼의 남녀구성비도 1992년 37.2%, 1993년 47.5%로 외국인 아내가 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미만이었다면, 2007년 76.1%, 2008년 77.8%로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국제결혼의 비율이 2003년을 기준으로 급증하였으며, 특히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아내를 맞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추이

(단위 : 명, %)

연도	총 결혼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혼인건수	구성비	혼인건수	구성비	혼인건수	구성비
1992	419,774	5,534	100.0	2,057	37.2	3,477	62.8
1993	402,593	6,545	100.0	3,109	47.5	3,436	52.5
⋮	⋮	⋮	⋮	⋮	⋮	⋮	⋮
1999	362,673	10,570	100.0	5,775	54.6	4,795	45.4
2000 ¹⁾	332,090	11,605	100.0	6,945	59.8	4,660	40.2
2001	318,407	14,523	100.0	9,684	66.7	4,839	33.3
2002	304,877	15,202	100.0	10,698	70.4	4,504	29.6
2003	302,503	24,776	100.0	18,751	75.7	6,025	24.3
2004	308,598	34,640	100.0	25,105	72.5	9,535	27.5
2005	314,304	42,356	100.0	30,719	72.5	11,637	27.5
2006	330,634	38,759	100.0	29,665	76.5	9,094	23.5
2007	343,559	37,560	100.0	28,580	76.1	8,980	23.9
2008	327,715	36,204	100.0	28,163	77.8	8,041	22.2
1997~ 2008	3,245,360	266,195	100.0	194,085	70.26	72,110	29.74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각년도, 2010.

2. 국적별로 분석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1990년대에 국제결혼이 시작하기 이전에는 주로 종교단체를 통한 일본 여성 결혼이민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³⁾ 1988년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중국과의 수교가 재개된 1992년 이후 중국 동포와 한족의 결혼 이주가 활발해졌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필리핀, 태국, 몽골, 우주베키스탄공화국 여성으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말부터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러시아 등 외국인 아내의 국적이 더욱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은 총 25,142건으로 외국 여성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11,364(45%), 베트남 7,249(29%), 필리핀 1,643(7%), 일본 1,140(5%), 캄보디아 851(3%)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가 84%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인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외국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수는 2006년을 최고점으로 하여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여성의 혼인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가고 있음은 표1에서 살펴보았지만, 또 다른 특징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선진국의 여성결혼이민자보다는 우리나라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다소 뒤처지는 저개발국가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는 전체 여성결혼이민자의 9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해체 시에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지위하락과 이에 따른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직결되는 현

3) 국제결혼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는 남인숙·장흔성, 결혼이민여성 가족의 출신국 문화이해, 사회이론(봄/여름), 2009, 14-17면.

상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문제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결혼이민자들이 배우자를 만난 경로이다.⁴⁾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만남이 25.1%로 가장 많으며,⁵⁾ '가족·친척의 소개' 23.1%, '친구·동료의 소개' 23.1% 등이었고, 그 외 본인 '스스로' 18.2%, '종교기관을 통해서' 6.4% 등으로 나타난다. 이를 다시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녀 간의 배우자를 만나는 경로에 차이가 있는데,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경우가 27.0%로 가장 많으나, 남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에 의한 경우가 46.0%로 가장 많으며 여성결혼이민자와는 달리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경우가 2.10%에 불과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2> 결혼이민자의 혼인상태별 현 배우자 만난 경로

(단위 %, 명)

구분	결혼 중개업체	가족, 친척의 소개	친구, 동료의 소개	종교기관 을 통해	스스로	기타	계(수)
전체 결혼이민자							
전체	25.1	23.3	23.1	6.4	18.2	3.9	100(117,777)
유배우	25.5	23.1	22.7	6.5	18.3	3.9	100(113,082)
이혼	14.0	29.4	33.8	2.7	16.2	3.9	100(3,769)
사별	14.0	29.6	29.6	12.7	10.1	4.0	100(926)
여성 결혼이민자							
전체	27.0	24.1	22.9	6.7	15.8	3.5	100(108,698)
유배우	27.5	23.9	22.4	6.7	15.9	3.5	100(104,273)
이혼	14.8	29.6	34.1	2.7	15.0	3.8	100(3,526)
사별	14.5	29.3	30.0	13.1	9.3	3.8	100(899)

4) 김승권 외 7인,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91-297면.

5) 김유경 외,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남성 결혼이민자							
전체	2.1	14.1	25.7	3.7	46.0	8.4	100(9,079)
유배우	2.1	13.6	25.7	3.8	46.3	8.5	100(8,809)
이혼	2.5	27.2	28.8	2.5	33.7	5.3	100(243)
사별	0.0	10.7	11.1	0.0	37.0	11.1	100(27)

출처 : 김유경 외,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295면.

더구나 한국에 체류한 기간별로는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비율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1년 미만인 경우 41.1%가 1~2년 미만인 경우 40.2%, 그리고 2!5년 미만인 경우가 32.0%가 결혼중개업체에 의해 배우자를 만나고 있다. 나머지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배우자를 만나거나 '가족·친족의 소개'에 의해 배우자를 만난 비율이 높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는 체류기간이 짧은 경우 '결혼중개업체'에 의해 배우자를 만난 비율이 42.0~42.8%이며,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비율은 현저히 낮아지고 '가족·친족의 소개'나 본인 '스스로', '종교기관을 통해' 배우자를 만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배우자를 만난 경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것은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결혼인데, 또한 이들의 한국에 체류기간이 대단히 짧다는 점이 주목할 많다. 전체적으로는 1년 미만의 결혼이민자 중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혼인은 41.1%를, 1~2년 미만의 결혼이민자는 40.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혼인은 1년 미만인 경우는 42.8%, 1~2년 미만의 결혼이민자는 42.0%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결혼이민자만을 살펴볼 때에는 그 비율이 약간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즉 1년 미만인 경우와 1~2년 미만의 체류기간이 대단히 단기인 경우를 합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81.3%가 이에 속한다는 것은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는 한국의 적응이 상당히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나중에 이혼사유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성격 차이'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된다.

<표3>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별 현 배우자 만난 경로

(단위 %, 명)

구분	결혼 중개업 체	가족, 친척의 소개	친구, 동료의 소개	종교기 관을 통해	스스로	기타	계(수)
전체 결혼이민자							
전체	25.1	23.3	23.1	6.4	18.2	3.9	100(117,547)
1년미만	41.1	20.8	22.1	1.6	11.4	3.0	100(10,632)
1-2미만	40.2	21.3	22.5	1.8	11.3	2.9	100(15,262)
2-5년미만	32.0	22.9	24.3	2.4	14.9	3.4	100(39,079)
5-10년미만	10.4	24.5	23.8	10.5	26.1	4.7	100(27,808)
10년이상	14.6	25.0	21.2	13.0	21.6	4.7	100(25,076)
여성 결혼이민자							
전체	27.0	24.1	22.9	6.7	15.8	3.5	100(108,771)
1년미만	42.8	20.9	22.0	1.4	10.1	2.7	100(10,152)
1-2미만	42.0	21.3	22.1	1.9	10.0	2.7	100(14,572)
2-5년미만	34.0	23.2	24.2	2.4	13.1	3.0	100(36,564)
5-10년미만	11.4	26.0	23.6	11.3	23.1	4.5	100(24,908)
10년이상	16.0	26.7	20.8	13.8	18.6	4.2	100(22,575)
남성 결혼이민자							
전체	2.1	14.1	25.7	3.7	45.9	8.4	100(9,086)
1년미만	4.4	19.0	23.8	5.0	38.5	9.4	100(480)
1-2미만	2.6	20.0	29.1	0.7	38.7	8.8	100(690)
2-5년미만	2.7	19.2	26.4	2.7	40.3	8.7	100(2,515)
5-10년미만	1.5	11.2	25.3	3.4	51.8	6.8	100(2,900)
10년이상	1.7	9.7	25.0	5.8	48.3	9.7	100(2,501)

출처 : 김유경 외,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296면.

이러한 경향은 결혼연도별로도 나타나는데, 2004년 이전에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는 모두 '가족·친족의 소개'에 의해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종교기관을 통해'였으며, 2005년 이후 여성결혼이민자는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비율이 36.3%로 가장 많다. 결혼중개업체에 의해 결혼한 이민자는 최근 에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혼인의 비율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 가정에서 여성결혼 이민자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표4>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여성의 국적별 혼인인구

(단위 : 건, %)

외국인 아내의 국적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구성비 (2009년 기준)
계	9,684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100
대만(타이완)	21	29	52	84	114	104	129	152	134	1
필리핀	502	838	928	947	980	1,117	1,497	1,857	1,643	7
베트남	134	474	1,402	2,461	5,822	10,128	6,610	8,282	7,249	29
캄보디아	2	2	19	72	157	394	1,804	659	851	3
라오스	2	1	2	6	2	5	11	16	20	0
말레이시아	7	18	9	21	15	11	16	23	28	0
인도네시아	48	67	88	82	99	97	74	77	81	0
태국(타이)	182	327	345	324	266	271	524	633	496	2
네팔	2	21	22	32	16	33	82	159	316	1
몽골	118	194	320	504	561	594	745	521	386	2
중국	6,977	7,023	13,347	18,489	20,582	14,566	14,484	13,203	11,364	45
일본	701	690	844	809	883	1,045	1,206	1,162	1,140	5
카자흐스탄	27	3	67	44	36	26	25	21	18	0
우즈베키스탄공화국	66	183	328	247	332	314	351	492	365	1
캐나다	38	55	44	74	92	91	134	117	134	1
미국	262	267	322	341	285	331	376	344	416	2
호주	41	41	32	37	34	45	63	61	65	0
뉴질랜드	1	7	4	11	13	9	15	20	20	0
키르기스스탄	41	47	42	46	33	80	62	49	54	0
러시아	155	236	297	315	234	203	152	110	139	1
기타 및 미상	357	175	237	159	163	201	220	205	223	1

출처: 통계청, 한국인 남편의 혼인종류/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혼인, 2010.

3.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어려움⁶⁾

가. 여성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체류보장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보장받아야 한다. 여성결혼이민자는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할 상황에서 국내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성급하게 재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현재는 국적법 개정으로 한국인 남편 사망의 경우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경우에는 간이귀화요건⁷⁾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⁸⁾이 있다.

위장결혼 등의 증가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에게도 2년 동안은 체류비자(F2) 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체류비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2년 동안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

6)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2008년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①사회적응을 위한 한글·문화교육 서비스(35.1%), ②다문화가족 편견을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23.1%), ③경제적 지원(20.9%), ④직업훈련 및 취업알선(15.5%), ⑤혼혈인자녀 위한 특별 교육과정지원(5.1%)의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정부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2010)

7)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8) 이는 국적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다.

에 복지혜택 등도 누릴 수 없다. 국적취득을 위해 혼인한 후에 국내거주 2년이라는 기간은 결혼이민자의 위장혼인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정된 것으로 이 기간을 폐지되어야 한다. 위장결혼은 기회수사 등을 통하여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국적취득에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일본 3년, 프랑스 6개월)와 없는 경우(스위스)로 나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일반귀화의 거주요건인 5년에 비해 짧아짐으로써 귀화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2년이라는 거주기간은 우리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조건으로 체류비자를 갱신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기간에 이혼 등으로 결혼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미등록자(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불안정한 법적 지위의 상태로 생활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국적취득 요건에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가정 내에서의 권력관계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요건의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불안정한 체류권(영주권)은 가족 내에서의 지위에도 영향을 준다.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을 해주지 않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거나, 국적취득에 협조해 주지 않거나 또는 2년 이내에 파경에 이르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외국인출신 결혼이민자의 국적은 대단히 불안정해 진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종속적인 입장이 되기 쉽다. 이처럼 불공정한 법적 지위로 인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가족 내에서 무시를 당하거나 학대를 받음으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지위기반이 약해지기도 한다.⁹⁾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회생활에서나 다른 가족으로부터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9) 서종남, 결혼이민자 가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42권 제1호, 2010. 3, 109면.

나. 경제의 빈곤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경제적·문화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의 가구소득은 전반적으로 낮으며, 빈곤층이 다수이다.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38.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0~300만원 미만으로 18.7%이다. 저소득층인 100만원 미만이 21.3%로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고소득층인 500만원이상은 2.1%에 불과한 실정이다.¹⁰⁾

체류기간별 월평균 가구소득은 전체적으로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의 비율 또한 높아진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월평균가구소득이 상당히 열악하다. 50~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취득한 가구가 16.3%, 100~200만원 미만의 소득이 38.9%, 200~300만원 미만의 소득이 18.8%로, 월평균 3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7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일반 한국가구의 가구소득이 332만 2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대단히 열악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5>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별 가구소득

(단위: %, 명)

구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모르겠다	계(수)
전체결혼이민자											
전체	5.1	16.2	38.4	18.7	5.7	1.8	0.9	0.5	0.7	12.0	100(126,312)
1년미만	3.8	11.1	34.5	17.8	5.6	1.5	0.6	0.2	0.7	24.3	100(11,049)
1-2미만	4.3	13.5	38.4	18.2	5.2	1.2	0.8	0.3	0.5	17.6	100(15,830)

10) 한국복지패널(2009)에 의하면 전체 일반 한국가구의 가구소득은 332만 2천원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의 특수성과 해체 시 친권자결정

2-5년미만	4.8	16.5	39.9	18.5	5.2	1.6	0.7	0.4	0.6	11.9	100(41,325)
5-10년미만	5.7	17.0	39.5	19.6	6.2	2.0	1.2	0.6	0.9	7.2	100(29,566)
10년이상	5.9	19.0	36.9	20.1	6.9	3.0	1.2	0.7	1.1	5.1	100(18,100)
여성결혼이민자											
전체	5.0	16.3	38.9	18.8	5.5	1.6	0.8	0.4	0.6	12.1	100(105,804)
1년미만	3.3	10.3	34.7	18.1	5.7	1.4	0.7	0.2	0.7	24.9	100(10,485)
1-2미만	4.1	13.1	38.5	18.2	5.3	1.2	0.7	0.3	0.5	18.2	100(15,024)
2-5년미만	4.8	16.5	40.0	18.4	5.1	1.4	0.6	0.4	0.4	12.4	100(38,287)
5-10년미만	5.8	17.7	40.0	19.3	5.8	1.8	1.0	0.4	0.8	7.4	100(26,106)
10년이상	6.2	20.3	37.4	19.6	6.3	2.6	1.0	0.6	0.9	5.2	100(15,902)
남성결혼이민자											
전체	5.6	14.4	35.9	20.8	8.3	4.2	1.9	1.1	2.0	5.9	100(10,066)
1년미만	13.1	25.2	30.0	12.3	3.0	2.8	-	-	1.2	12.3	100(563)
1-2미만	8.9	21.2	35.4	19.1	3.8	1.4	1.1	0.7	1.1	7.3	100(808)
2-5년미만	4.9	16.6	39.0	19.5	7.1	4.1	1.0	0.5	2.1	5.2	100(3,040)
5-10년미만	4.9	11.9	35.9	22.2	9.1	3.8	2.6	1.6	1.9	6.0	100(3,458)
10년이상	4.3	9.7	33.1	23.3	11.6	6.3	2.6	1.5	2.6	4.8	100(2,197)

출신국별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필리핀, 중국 조선족, 캄보디아 등 동남아 출신의 결혼이민자가 저소득층이 많고, 북미·호주·서유럽 등 선진국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고소득층이 많다. 이는 북미·호주·서유럽 등 선진국 출신 결혼이민자의 입국목적이 취업인 경우가 45.4%인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전체 결혼이민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월평균 가구소득을 모른다고 응답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비율이 남성결혼이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는 그 출신국이 필리핀(25.3%), 캄보디아(21.6%), 베트남(21.1%)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은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비율이 매우 높았던 점과 관련

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은 상대배우자 또는 상대배우자의 가족이 가정 내에서 경제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부분이다.¹¹⁾

<표6>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가구소득

(단위: %, 명)

구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모르겠다	계(수)
전체 결혼이민자											
전체	5.1	16.2	38.4	18.7	5.7	1.8	0.9	0.5	0.7	12.0	100(126,310)
중국(조선족)	5.7	19.0	40.8	20.4	5.8	1.7	0.6	0.2	0.4	5.4	100(38,736)
중국(한족 등)	4.4	14.3	39.8	21.0	6.7	2.0	0.9	0.4	0.6	9.9	100(34,914)
베트남	5.1	17.4	38.1	14.6	2.4	0.6	0.3	0.2	0.2	21.0	100(24,258)
필리핀	9.0	19.7	29.2	8.3	3.8	0.9	1.3	1.0	1.8	25.1	100(7,811)
몽골	4.9	12.7	44.3	17.2	5.6	0.8	0.8	0.3	0.4	12.9	100(1,780)
태국	5.5	15.6	39.2	20.0	4.9	1.2	0.7	1.0	0.7	11.3	100(1,687)
캄보디아	8.6	15.1	38.3	12.0	3.1	0.7	0.2	0.1	0.2	21.6	100(2,450)
일본	3.2	13.2	37.3	23.5	7.9	3.0	1.5	0.6	1.0	8.8	100(5,238)
북미,호주,서유럽	2.1	1.4	7.7	24.7	18.5	12.9	9.6	5.2	7.0	10.8	100(2,316)
기타	2.9	11.6	38.0	19.8	8.9	3.4	1.5	0.7	1.7	11.5	100(7,075)
여성 결혼이민자											
전체	5.1	16.4	38.6	18.5	5.4	1.6	0.8	0.4	0.6	12.5	100(115,232)
중국(조선족)	5.5	19.0	40.5	20.5	5.9	1.7	0.6	0.2	0.4	5.6	100(34,952)
중국(한족 등)	4.1	13.8	39.7	21.3	6.9	2.1	0.9	0.4	0.6	10.2	100(32,033)
베트남	5.2	17.3	38.1	14.7	2.4	0.6	0.3	0.2	0.2	21.1	100(24,145)
필리핀	9.1	19.9	28.9	8.3	3.6	0.8	1.3	1.0	1.8	25.3	100(7,681)
몽골	4.9	12.3	44.5	17.4	5.6	0.7	0.8	0.3	0.5	13.1	100(1,750)
태국	4.9	15.8	39.1	20.1	3.1	0.7	0.2	0.1	0.2	21.6	100(1,668)

11) 김승권 외 7인, 전계논문, 204면.

캄보디아	8.6	15.1	38.3	12.0	3.1	0.7	0.2	0.1	0.2	21.6	100(2,445)
일본	3.3	13.6	38.5	23.1	7.2	2.7	1.3	0.5	0.8	8.9	100(4,866)
북미,호주,서유럽	2.8	0.8	8.9	18.1	14.4	6.4	11.5	5.5	10.6	21.0	100(529)
기타	2.9	11.7	36.6	19.5	9.1	3.2	1.5	0.6	1.5	13.3	100(5,165)
남성결혼이민자											
전체	5.4	14.7	36.0	20.4	8.1	4.1	2.1	1.1	2.0	6.0	100(11,079)
중국(조선족)	7.5	18.5	44.2	19.2	4.6	1.1	0.2	0.1	0.4	4.2	100(3,787)
중국(한족 등)	6.9	20.6	40.6	17.8	4.0	1.6	0.7	0.0	1.2	6.5	100(2,879)
일본	1.4	8.4	22.2	27.7	15.8	6.4	3.6	1.9	4.1	8.6	100(429)
북미,호주,서유럽	1.8	1.6	7.4	26.6	19.7	14.8	9.1	5.1	6.0	7.8	100(1,789)
기타	3.4	12.4	41.7	19.4	8.7	3.5	1.2	0.8	2.1	6.7	100(2,204)

이러한 원인은 여성결혼이민자 자신이 한국어실력 부족으로 취업활동을 자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어머니나 남편의 절대 반대 또는 유보적인 허락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이 일을 해서라도 친정집에 돈을 보내야 하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도 반대를 하거나, 여성결혼이민자가 생활능력이 생기면 남편이나 가정을 떠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어려운 친정을 돕고자 결혼하게 된 모계중심 문화권의 배경을 지닌 사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성의 혼인과 동시에 친정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출가외인'이라는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어,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제적·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결혼 전의 기대감과 설렘은 실망감으로 바뀌어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다. 문화적 갈등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에 한국의 제도나 문화, 언어에 대해

배우고 들어오는 경우가 매우 적다. 조선족 동포 외에는 대부분의 여성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어도 모르고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결혼 초부터 가족이나 부부사이에서도 일상적인 대화조차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의 가족구성원들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한국문화를 강요하고 상대방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가족간 또는 부부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갈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가정불화나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¹²⁾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남존여비사상이나 가부장 문화는 보다 독립적이거나 양성평등한 문화를 경험한 중국출신 결혼이민자나 이러한 문화를 겪어 보지 못한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출신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인내하기 어려운 충격으로 작용하게 되고, 나중에 가족 내의 갈등원인이 되기도 한다.¹³⁾ 또한 혈통주의에 익숙한 우리의 문화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많이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며, 특히 유색인종에 대해 더 심한 상황이다. 이러한 우리의 문화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일방적인 한국문화의 습득을 강요하면서도, 상대 배우자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난다.¹⁴⁾

라. 자녀교육의 어려움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가족의 부모 중에 모가 외국인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 어머니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많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한국의 언어나 문화에 대한 부적응과 외국

12) 구차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20호, 2007. 8, 333-334면

13) 박선영외 3인,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연구보고서 14, 2008. 160면.

14) 10년의 결혼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상대 배우자 국가의 간단한 인사말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남인숙장혼성, 전개논문, 20면)

인부모의 학습지원의 결여, 학교에서의 따돌림 현상 등으로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다.

다문화가족에 속한 학생들의 정체성, 학업문제, 학교생활, 교유관계 등에 관하여 다문화가족출신이라는 점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며, 일반 한국학생들과 다르게 대우받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정서적·신체적 위기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배척당했다는 박탈감을 느끼게 하므로 이러한 경험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학생이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학업포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일반가족 아동에 비해 낮은 자아개념과 높은 우울 수준을 가진다고도 한다.¹⁵⁾

이러한 원인들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편견과 따돌림,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교유관계에서 겪게 되는 편견과 따돌림의 문제이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언어적·문화적인 적응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출신 어머니와의 생활은 자녀의 언어발달을 저해하여 때로는 실어증이나 대인기피현상까지 나타난다. 이러한 환경요인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 교유관계에서 다른 가정환경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나 편견·냉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따돌림과 차별을 경험하면서 교유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후에 사회적응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언어지체와 학습결손 외에도 정체성의 혼란과 학교 부적응에 처하게 된다. 부모의 문화적·민족적·인종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는 자녀들이 부모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정체감의 상실

15) 서종남, 결혼이민자 가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42권 제1호, 2010. 3, 112면.

에 직면할 수 있다. 자녀들의 학업성적이 좋아도 정체성에 대한 자존감의 부족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을 소극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더구나 다른 교우들의 다문화가족의 몰이해는 이들은 더욱 위축시켜 소외감을 들게 한다. 이러한 가정환경의 열악함과 부정적 사회인식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쳐, 낮은 학성성취나 소외감·우울·불안장애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 학생들의 따돌림은 그 발생원인이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후에 인종문제화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편견과 따돌림, 언어지체와 학습결손·정체성혼란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학교가기를 꺼려하는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다.

Ⅲ. 다문화가족의 해체(이혼)의 특수성

1. 이혼의 증가

가. 다문화가족 부부의 이혼

2009년도 한국인과 외국인결혼이민자 부부의 총 이혼은 11,662명으로 2008년도보다는 9.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8년도 이전까지의 증감률을 보면 2003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2009년도에는 다시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총 이혼건수에서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이 이혼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서히 증가하다가 2009년도에 와서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를 증명하고 있는데, 2003년부터 국제결혼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이혼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9년도 현재에는 우리나라 총 이혼건수의 9%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8.2%인 점을 감안한다면, 다문화가족의 이혼률이 일반 한국인가정의 이혼률보다 다소 높은 점이 특징이다. 혼인생활의 안정적인 측면에서 2009년도에 이혼의 건수 및 증감률이 다소 낮아진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살펴볼 대목이라고 생각된다. 2009년의 이혼건수와 관련하여 또 다른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다문화가족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비율이 70.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출신 여성결혼이민자와의 혼인의 비율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표7>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단위: 건,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이혼 건수	144,910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123,999
· 외국인과의 총 이혼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11,692
총 이혼 대비 구성비	1.2	1.2	2.4	3.3	4.9	7.0	9.7	9.4
증 감	50	268	1,288	871	1,965	2,535	2,584	437
증 감 률	3.0	15.4	64.0	26.4	47.1	41.3	29.8	3.9
한국인 남편+외국인 처	380	547	1,567	2,382	3,933	5,707	7,962	8,300
증 감 률	-1.8	43.9	186.5	52.0	65.1	45.1	39.5	4.2
한국인 처+외국인 남편	1,364	1,465	1,733	1,789	2,203	2,964	3,293	3,392
증 감 률	4.4	7.4	18.3	3.2	23.1	34.5	11.1	3.0

출처: 통계청, 시도/외국인 남편·아내의 국적별 이혼, 2010을 재구성한 것임.

나. 국적별 이혼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출신결혼인민자인 처와의 이혼은 2009년도 기준으로 8,300건으로 중국 5,562건, 베트남 1,292건, 필리핀 285건, 일본 227건의 순서로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인출신의 결혼이민자의 혼인누적건수가 다른 외국인출신 결혼이민자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아 이혼비중 중에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이한 점은 캄보디아출신의 결혼이민자의 이혼률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8> 국적별 외국인과의 이혼건수 및 구성비

(단위: 건, %)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2005	2006	2007	2008	2009	구성비
계	2,382	3,933	5,707	7,962	8,300	100
필리핀	140	165	213	268	285	3.4
베트남	289	610	895	1,078	1,292	15.5
캄보디아	6	19	99	178	109	1.3
태국(타이)	36	33	59	85	113	1.3
몽골	116	132	173	213	176	2.1
중국	1,425	2,538	3,654	5,398	5,562	67.0
일본	116	147	157	205	227	2.7
우즈베키스탄공화국	75	105	112	160	174	2.0
미국(미합중국)	61	73	71	95	94	1.1
러시아	52	43	63	75	66	0.7
기타	66	68	211	207	202	2.4

출처 : 통계청,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이혼, 2010.

다. 동거기간별 이혼

2008년에 이혼한 한국인과 외국인출신결혼이민자 부부의 평균 동거기간은 한국인 남편과 여성결혼이민자 부부가 2.7년, 남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처 부부가 5.6년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의 경우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 배우자를 만나는 경로와 관련하여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이 그 이유로 생각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에서 겪는 어

려움을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2008년 한국인과 외국인출신 결혼이민자의 이혼 11,255건 중 동거기간이 5년 미만인 비율은 82.7%임을 알 수 있다. 이는 2002년 66.9%보다 15.9% 증가한 것으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이다.

<표9>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평균 동거기간

(단위: 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한국인 남편+외국인 처	2.2	2.3	2.1	2.1	2.2	2.5	2.7
외국인 남편+한국인 처	5.3	5.3	6.0	5.7	5.3	5.9	5.6
전 년 대 비 증 감							
한국인 남편+외국인 처	-0.6	0.2	-0.3	0.0	0.1	0.3	0.2
외국인 남편+한국인 처	0.0	0.0	0.7	-0.3	-0.4	0.6	-0.3

출처: 통계청, 시도/외국인 남편·아내의 국적별 이혼, 2009.

라.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출신의 결혼이민자와의 이혼 중 90.1%로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이 해체될 때에 미성년자녀가 없는 부부의 구성비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출신의 결혼 이민자 부부는 이혼 7,962건 중 90.1%(7,170건), 반대인 경우에는 이혼 3,293건 중 79.4%(2,615건)를 차지하고 있다. 이혼 당시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출신의 결혼이민자 부부의 이혼은 614건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수별로는 1명이 430건, 2명 159건, 3명 이상은 25건이며, 국적별로는 중국 256건, 베트남 108건, 일본 59건이다.

<표10> 외국인과의 이혼 당시 20세 미만 자녀 유무별 이혼(2008년)

(단위: 건, %)

외국인 처와의 이혼당시 20세 미만 자녀 유무별 이혼

	계	구성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몽고	우즈베 키스탄	캄보디아	기타
자녀 있음	871	10.5	394	182	39	39	19	20	13	135
1명	527	6.4	201	145	27	36	12	15	9	82
2명	125	1.5	45	16	4	23	2	2	2	31
3명 이상	25	0.3	8	1	1	7	0	0	0	8
미상	194	2.3	140	20	7	3	5	3	2	14
자녀 없음	7,429	89.5	5,168	1,110	246	158	157	154	96	340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당시 20세 미만 자녀 유무별 이혼

	계	구성비	일본	중국	미국	파키스탄	방글라 데시	캐나다	기타
자녀 있음	495	14.6	224	117	49	2	5	8	82
1명	298	8.8	118	78	38	0	3	6	55
2명	91	2.7	39	20	7	0	1	1	23
3명 이상	8	0.2	2		4	0	1	1	0
미상	98	2.9	65	19	8	2	0	0	4
없음	2,897	85.4	1,404	947	206	33	26	21	260

2. 이혼의 원인

다문화가족의 전체적인 해체이유로 살펴볼 수 있는 이혼·별거 사유로는 '성격차이' 29.4%, '경제적 무능력' 19.0%, '외도' 13.2%, '학대와 폭력' 12.9%, '심각한 정신장애 및 기타' 9.8%, '음주 및 도박' 8.7%,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7.0% 등이다.¹⁶⁾

가. 지역별 이혼원인

특이한 점은 지역별로 살펴볼 때에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외도·배우자 가족과의 갈등·경제적 무능력이 높고, 성격차이·학대와 폭력·심각한 정신장애 및 기타 등은 농촌지역이 더 높다. 도시지역은 농촌지역에 비해 경제적 무능력, 외도,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 높고,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성격차이, 학대와 폭력, 음주와 도박, 심각한 정신장애 및 기타 등이 높다. 이는 도시지역의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이혼·별거 사유와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자의 이혼·별거 사유가 다르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의 정책에 있어 각각의 독립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표11> 이혼·별거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별 이혼·별거 이유

(단위: %, 명)

구 분	외 도	성격차 이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무능력	학대와 폭력	음주 및 도박	심각한 정신장애 및 기타	계(수)
전체결혼이민자								
전 체	13.2	29.4	7.0	19.0	12.9	8.7	9.8	100(3,666)
동지역	13.2	29.2	7.2	19.3	12.8	8.6	9.6	100(3,404)
읍·면지역	12.2	32.7	4.9	14.8	13.7	9.1	12.5	100(262)
여성결혼이민자								
전 체	12.7	28.4	7.2	19.7	13.7	8.8	9.4	100(3,440)
동지역	12.7	28.1	7.4	20.2	13.7	8.8	9.2	100(3,182)
읍·면지역	12.4	32.6	5.0	14.0	14.0	9.3	12.8	100(258)
남성결혼이민자								
전 체	20.4	44.7	4.9	8.0	-	6.6	15.5	100(226)
동지역	20.7	44.6	5.0	7.2	-	6.8	15.8	100(222)
읍·면지역	0.0	50.0	0.0	50.0	-	0.0	0.0	100(4)

16) 2009년도 한국인 부부의 이혼사유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성격차이(46.6%), 경제문제(14.4%), 배우자부정(8.3%), 가족간 불화(7.3%), 정신적·육체적 학대(5.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이혼사유별 이혼, 2010)

나. 성별 이혼원인

성별로는 여성결혼이민자는 성격차이·경제적 무능력·학대 및 폭력을, 남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성격차이·외도·심각한 정신장애 및 기타 순서로 이혼·별거사유가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학대 및 폭력(13.7%)을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별거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어,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과의 관계에서 학대·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¹⁷⁾ 한국인 부부의 이혼사유로서 학대 및 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인데 반하여 2배 이상 높다는 점은 외국인출신 결혼이민자가 가정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생각한다.

<표12> 이혼사유별 외국인과의 이혼

남편 주소	외국인 처와 한국인 남편의 이혼사유								
	계	배우자 부정	정신적 육체적 학대	가족간 불화	경제문제	성격차이	건강문제	기 타	미 상
전 국	8,300	829	586	502	490	2,327	87	3,303	176
서울특별시	2,079	241	198	115	152	600	18	713	42
부산광역시	446	39	19	29	25	116	7	204	7
대구광역시	243	28	6	14	18	70	-	105	2
인천광역시	530	53	47	33	32	130	8	216	11
광주광역시	183	22	15	13	9	36	2	83	3
대전광역시	198	19	12	11	14	54	2	84	2
울산광역시	150	20	5	11	5	44	1	63	1
경기도	1,948	182	130	127	117	599	23	714	56
강원도	208	24	9	15	13	50	1	91	5
충청북도	275	19	17	18	7	88	4	116	6
충청남도	368	38	35	20	14	95	5	156	5

17) 김승권 외 7인, 전계논문, 356면.

III. 다문화가족의 해체(이혼)의 특수성

전라북도	333	25	27	21	22	83	3	149	3
전라남도	377	37	27	20	18	84	6	173	12
경상북도	372	41	15	22	13	95	1	175	10
경상남도	426	34	20	24	21	113	5	204	5
제주특별자치도	77	7	3	4	2	19	1	40	1
국 외	87	-	1	5	8	51	-	17	5
처 주소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의 이혼사유								
	계	배우자 부정	정신적 육체적 학대	가족간 불화	경제문제	성격차이	건강문제	기 타	미 상
전 국	3,392	274	97	159	278	1,334	32	1,103	115
서울특별시	956	94	30	41	71	346	9	333	32
부산광역시	200	13	9	10	15	80	3	69	1
대구광역시	59	1	-	2	7	28	1	19	1
인천광역시	182	19	7	9	11	69	3	62	2
광주광역시	33	5	2	3	4	8	-	9	2
대전광역시	43	3	-	-	3	18	-	19	-
울산광역시	30	3	1	-	2	13	-	11	-
경기도	778	63	16	39	61	275	7	301	16
강원도	45	5	4	-	5	15	-	15	1
충청북도	49	3	1	1	3	18	-	22	1
충청남도	84	11	1	11	3	23	-	33	2
전라북도	48	2	2	3	3	19	1	18	-
전라남도	57	4	1	2	7	19	1	22	1
경상북도	33	4	1	-	-	14	-	14	-
경상남도	75	4	4	3	7	27	1	29	-
제주특별자치도	39	2	-	3	3	12	1	17	1
국 외	681	38	18	32	73	350	5	110	55

다. 체류기간별 이혼원인

체류기간별로는 1년 미만과 5년 이상은 성격차이를, 1~2년 미만은 학대와 폭력을, 2~5년 미만은 외도를 이혼·별거 사유로 들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체류기간별 이혼·별거 사유가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성격차이, 외도, 학대 및 폭력의 순서로 이혼의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고, 체류기간이 1~2년 미만은 학대 및 폭력(35.4%)을, 체류기간이 2~5년 미만은 외도와 학대 및 폭력을, 5년 이상은 성격차이, 경제적 무능력 등을 지적한 비율이 높다. 반면에 남성결혼이민자는 주로 성격 차이와 외도가 가장 높은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여성결혼이민자와는 차이가 있다.

<표13>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별 이혼·별거 이유

(단위: %, 명)

구 분	외 도	성격차 이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무능력	학대와 폭력	음주 및 도박	심각한 정신장애 및 기타	계(수)
전체결혼이민자								
전 체	13.2	29.4	7.0	19.0	12.9	8.7	9.8	100(3,666)
1년 미만	17.6	29.4	0.0	8.8	17.6	14.7	11.8	100(34)
1-2년 미만	16.4	16.4	1.4	2.7	31.5	13.7	17.8	100(72)
2-5년 미만	22.8	14.2	4.1	15.5	18.9	12.5	11.9	100(779)
5-10년 미만	11.9	34.0	7.2	18.8	10.9	7.7	9.5	100(3,666)
10년 이상	8.9	34.0	8.9	22.1	10.4	7.1	8.6	100(3,666)
여성결혼이민자								
전 체	12.7	28.4	7.2	19.7	13.7	8.8	9.4	100(3,441)
1년 미만	18.8	31.3	7.2	19.7	13.7	8.8	9.4	100(32)
1-2년 미만	15.4	12.3	1.5	3.1	35.4	15.4	16.9	100(65)
2-5년 미만	22.7	12.9	4.7	16.4	21.5	12.4	9.5	100(684)
5-10년 미만	11.6	32.3	7.0	19.7	11.6	7.9	9.9	100(1,253)
10년 이상	8.7	33.2	9.0	22.3	10.7	7.4	8.7	100(1,407)

III. 다문화가족의 해체(이혼)의 특수성

남성결혼이민자								
전 체	20.4	44.4	4.9	8.4	-	6.7	15.6	100(225)
1년 미만	-	-	-	-	-	-	-	100(2)
1-2년 미만	28.6	57.1	-	-	-	-	14.3	100(7)
2-5년 미만	24.2	24.2	-	9.5	-	12.6	29.5	100(95)
5-10년 미만	17.8	63.0	9.6	2.7	-	4.1	2.7	100(73)
10년 이상	14.6	56.3	8.3	16.7	-	0.0	4.2	100(48)

라. 출신국별 이혼원인

출신국별로는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북미·호주·서유럽 등은 성격차이를, 베트남과 필리핀, 캄보디아는 학대·폭력을, 몽골은 심각한 정신장애 및 기타, 태국은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을 이혼·별거 사유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전체 출신국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남성 결혼이민자는 출신국별 모두 성격차이를 제일 높은 비율로 이혼사유를 보이고 있다.

<표14>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가구소득

(단위: %, 명)

구분	외도	성격차이	배우자가 족과의 갈등	경제적 무능력	학대와 폭력	음주 및 도박	심각한 정신장애 및 기타	계(수)
전체결혼이민자								
전체	13.1	29.4	7.1	19.0	12.9	8.7	9.8	100(3,665)
중국 (조선족)	12.0	32.4	6.7	20.6	11.5	7.8	8.9	100(2,363)
중국 (한족 등)	16.3	25.0	6.0	15.3	15.0	11.3	11.0	100(1,009)
베트남	19.0	17.5	6.3	11.1	23.8	6.3	15.9	100(63)
필리핀	12.2	20.4	13.3	15.3	21.4	10.2	7.1	100(98)
몽골	0.0	18.2	18.2	18.2	18.2	0.0	27.3	100(11)

다문화가족의 특수성과 해체 시 친권자결정

태국	0.0	36.4	45.5	0.0	9.1	9.1	0.0	100(11)
캄보디아	0.0	0.0	0.0	0.0	100.0	0.0	0.0	100(3)
일본	25.0	16.7	25.0	25.0	8.3	0.0	0.0	100(12)
북미,호주, 서유럽	33.3	66.7	0.0	0.0	0.0	0.0	0.0	100(13)
기타	2.4	15.5	15.5	32.1	7.1	7.1	22.6	100(82)
여성 결혼이민자								
전체	12.7	28.5	7.2	19.7	13.7	8.8	9.4	100(3,441)
중국 (조선족)	10.9	32.3	6.6	21.3	12.1	7.8	8.8	100(2,248)
중국 (한족 등)	17.2	22.2	6.6	16.1	16.5	11.5	9.9	100(920)
베트남	19.0	17.5	6.3	11.1	23.8	6.3	15.9	100(63)
필리핀	12.2	20.4	13.3	15.3	21.4	10.2	7.1	100(98)
몽골	0.0	18.2	18.2	18.2	18.2	0.0	27.3	100(11)
태국	0.0	36.4	45.5	0.0	9.1	9.1	0.0	100(11)
캄보디아	0.0	0.0	0.0	0.0	100.0	0.0	0.0	100(3)
일본	25.0	16.7	25.0	25.0	8.3	0.0	0.0	100(12)
북미,호주, 서유럽	50.0	50.0	0.0	0.0	0.0	0.0	0.0	100(8)
기타	3.0	7.5	14.9	35.8	6.0	9.0	23.9	100(67)
남성결혼이민자								
전체	20.1	44.6	4.9	8.0	-	6.7	15.6	100(224)
중국 (조선족)	33.0	33.9	7.0	7.8	-	7.0	11.3	100(115)
중국 (한족 등)	7.9	53.9	0.0	7.9	-	7.9	22.5	100(89)
일본	-	-	-	-	-	-	-	-
북미,호주, 서유럽	0.0	100.0	0.0	0.0	-	0.0	0.0	100(5)
기타	0.0	53.3	20.0	13.3	-	0.0	13.3	100(15)

3. 한부모가정의 어려움

한부모가족은 그 형태가 다양하여 일반화할 수 없지만, 한부모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전반적으로 경제적 문제, 심리·정서적 문제, 자녀양육과 교육의 문제, 건강문제, 사회인식의 문제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¹⁸⁾ 즉 일방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 경제적 빈곤, 가족관계의 해체,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의 어려움, 역할과증으로 인한 만성피로 누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문제 등을 수반한다.¹⁹⁾

가. 경제적 어려움

한부모가정은 처한 상황은 다르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은 모두 겪고 있다. 이혼한 경우에 대다수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 혼자 자녀양육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전체 한부모가족의 9.0%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부조 성격의 법률을 통하여 보호받고 있다. 그런데 9.0%의 한부모가족 중에서 여성 한부모가족은 80.6%에 해당한다. 이는 일반 한부모와 마찬가지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에 여성 한부모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남성 한부모가족에 비해 더욱 심하다는 점이다. 모자가족이 부자가족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모자가족의 절대빈곤이 남성 한부모가족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²⁰⁾

18) 변화순 외,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복지욕구에 따른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 김승권 외,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등.

19) 석재은 외, 취약계층 여성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여성가족부, 2006, 43면.

20)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구조적 원인은 가족,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제도의 세가지 측면에서 접근된다.(박영란 외, 여성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3 ; 석재은 외, 여성의 빈곤실태 분석과 탈빈곤 정책과제 개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더구나 다문화가족의 해체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이 되었을 경우에 그 한부모가족이 외국인출신의 어머니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더욱 경제적 빈곤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한국인여성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더하여 외국인출신 여성결혼이민자로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이 더해져 한층 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여건이 다른 한국인 가정보다도 열악한 상태에서 이혼으로 인한 빈곤화와 외국인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차별에 기인한다. 그런데 자녀까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출신 결혼이민자와 자녀에 대하여는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나. 심리적·정서적 문제와 자녀양육의 문제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한부모는 3~5년간 정서적으로는 실패감, 배신감, 분노감, 상실감, 우울감, 좌절감 등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혼란의 지속은 이혼 후의 생활에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적절한 상담 및 치료를 받지 않으면 우울증이 깊어져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녀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더구나 한부모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아직 이혼이나 사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모습은 다문화가족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더구나 외국인출신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주위에 가족조차 없을 뿐만 아니

2003 등) 구조적 원인으로는 성역할분담에 따른 문제로 남성은 생계부장을 여성은 가정주부라는 성별분업체계에서 남성 생계부양자의 부재는 경제적 자원접근통로의 상실원인이 된다.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의 주변적 지위, 모성 및 아내로서의 책임 및 보살핌 노동으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우며, 진입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진입이나 가족생활로 인하여 잦은 이탈과 재진입이 이루어져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어렵게 하고 빈곤을 심화시킨다.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시장의 활동을 전제로 하므로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구조가 사회보장제도에 그대로 반영될 수 밖에 없다.

라,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을 나눌 동료마저 없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은 한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겪을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은 다른 가족과 달리 한 쪽 부모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문화가족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기존의 차별과 냉대에 이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 더해져 이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다. 사회적 인식의 문제

우리나라에서 한부모가족의 부모에 대하여 실패자, 인생낙오자 또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 부모 자격도 없는 사람 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부모는 사회에서 올바른 평가받기 힘들다. 한부모가족의 부모라고 하면 일단 취업의 문이 높고, 혹시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승진이 어렵다. 더구나 직장 내에서는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사회적 편견은 직장뿐만 아니라 원래의 가족과 친구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가족 간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친구와의 관계도 멀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족, 이웃, 사회의 지원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현실은 자립의지를 상실하게 하여 더욱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편견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을 모자라고 부족한 아이로 인식하거나,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있는 아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에서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생활조사나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이 공개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상처를 입기도 한다.

다문화가족의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에서의 인식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외국인의 편견과 더불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한부모가정 자녀에게는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편견이 더해져 이들이 사회에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IV. 다문화가정에서의 친권·양육권의 결정

1. 친권·양육권의 본질

가. 친권·양육권의 의의

친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인정된 권리·의미의 총칭이다.²¹⁾ 이러한 친권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적 측면과 의무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친권이 권리라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지배권이나 부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는 아니며, 부모로서의 그 자녀에 대한 건전한 사회적 육성이라는 사회적 의무를 띠고 있다. 이러한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자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아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친권의 목적은 자의 복리보호에 있다.²²⁾

친권을 이루는 내용으로서 민법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징계권 등을 인정하고 있고, 친권자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민법 제837조의 2), 이러한 면접교섭권도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필요한 친권의 일종이다. 또한 친권자에게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및 동의권이 있고, 부모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일정한 신분상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21) 곽동현, 이혼 후의 친자관계 -친권과 양육권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13집(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12, 20면.

22) 김명숙, 자의 복리와 친권, 자의 권리, 안암법학 제28집, 2009, 99면.

있다. 친권의 본질적 내용은 자녀를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의무와 권리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친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일반적으로 친권은 자녀의 보호, 교양, 징계, 거소지정,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등을 그 내용으로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양육권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의 양육은 친권의 주된 작용이므로, 그 양육권도 원칙적으로 친권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이혼에 의한 경우에는 양육자는 원칙적으로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되며, 예외적으로 부모 공동 또는 제3자가 되는 수가 있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양육자와 친권자가 동일한 것이 좋겠지만, 때로는 각각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혼 후에 자녀에 대한 친권은 부가 행사하고, 자녀의 양육은 모가 맡아서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²³⁾

나. 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양육권행사

자녀의 복리이념은 친자법의 최고이념으로서 민법상 개별규정이 없더라도 친자 법률관계 전체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⁴⁾ 따라서 현행법상의 자의 복리이념의 근거는 민법 제912조로 보아야 한다.²⁵⁾ 민법 제912조는 자녀의 복리는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원이 자녀와 관련되는 결정을 내리는 모든 경우에도 최고의 원칙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912조는 부모에게도 적용되지만, 국가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국가는 오직 자의 복리만을 위하여 친자관계에 개입할 때에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한다. 친권행사에 대한 국가개입은 주로 친권상실과

23) 곽동현, 전제논문, 29면.

24) 홍춘의, 친자법에 있어서 자의 복리개념, 민사법학 특별호 제36호, 2007. 5, 647면.

25) 민법 제912조(친권행사의 기준)는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친권의 행사의 기준으로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다. 친자관계에의 국가개입은 자에 관한 사항이 결정에 있어 부모 사리에 대립이 있는 경우와 부모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고 의견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필요할 수 있다. 자의 복리는 일차적으로 부모의 친권행사에서 부모의 고유한 이익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의 완전성과 성장에 최선의 기여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우리 민법은 이혼시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내지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민법 제837조 제2항), 면접교섭권의 제한 내지 배제(민법 제837조의2),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 등에서 친권자지정(민법 제909조 제5항), 후견인의 변경(민법 제940조) 등과 관련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법원은 자녀의 복리가 민법에 규정되지 않았어도 당연히 개입의 요건과 기준으로 기능한다. 이렇게 자녀의 복리에 대한 규정이 친자관계에 법원의 개입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의 복리는 친자관계에 법원이 개입할 때 주된 기능을 한다.

2. 부모의 이혼시 법률규정

부모의 이혼은 부부 당사자 사이의 문제뿐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법적으로는 문제되는 것이 친권자 및 양육자의 문제이다. 즉 이혼에 의해 부부의 공동생활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로서 친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 중 일방이 가지는지 또는 쌍방이 나누어 가지는지 등의 자녀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²⁶⁾

제정민법 제909조 제5항은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의 사망 후 모가 친가

26) 오시영, 친족상속법, 학현사, 2006, 157면.

에 복적 또는 재혼한 때에는 그 모는 전혼인 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여 전통적인 부권내지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에 이루어진 민법의 개정에서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당사자의 결정과 법원의 판단에 의하도록 하였다. 다시 2005년의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좀 더 발전하여 협의에 의하여 친권행사자를 지정하지 못한다면 법원에 양당사자는 당연히 그 결정을 구하여야 하도록 강제하였고, 친권자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협의에 의해 친권자가 정하여졌더라도 결정된 친권자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자라고 판단되면 법원이 그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친권·양육권행사자의 지정기준과 방법

가. 자의 복리를 위한 지정기준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함에 있어 자의 복리를 최대한의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는 부모와 자녀의 기존관계가 계속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적 관계, 환경 및 주위 환경의 영향이 계속되어야 한다.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자녀의 정상적 성장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실제적 양육상태의 지속성에 가치를 두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할 것이다. 자녀에 대한 애정이란 신체적 보살핌, 양육, 안정 및 관심, 사기의 진작 등 자녀에 대한 보살핌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심리적 부모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그 관계가 지속되도록,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일방에게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이익에 적합할 것이다.

둘째로는 부모의 적합성을 들 수 있다. 친권자를 결정함에는 자녀에게 보다 좋은 성장의 기회와 애정을 베풀 수 있는 부모의 일방에게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이익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 고려할 사항은 부모의 성격, 자녀를 스스로 돌보려고 하는지의 여부, 자녀와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단지 부모의 경제상태나 주거관계 등을 기준으로 자녀를 사실상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고려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에게 적합한 부모 중 일방을 지정하여야 한다.

나. 지정방법

부부가 이혼하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였던 혼인 중의 친권행사방법에 변경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 물론 법률이 원칙적으로 이혼 부부의 친권공동행사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혼 후라도 부부는 공동으로 친권행사를 할 수 있지만,²⁷⁾ 사실상의 문제로 인하여 단독 친권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혼에 의한 친권자 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²⁸⁾일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모 중에 누가 양육에 적합한지, 자녀와의 내적 결속이 누가 더 강한지, 자녀의 의사는 어떠한지를 모두 종합하여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²⁹⁾

27) 이혼 후 공동친권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양창수, 김상용 역, 친권법의 기본문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102호, 1996. 12, 78-82면.

28) 이혼 후 친권결정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권정희, 이혼에서 자녀보호를 위한 법적 고찰, 가족법연구 제15권 제1호, 2001. 06, 192면.

29) 대판 2010. 5. 13, 2009므1458,1465(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의하면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친권자 지정은 원칙적으로 부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는 평균적인 사회인을 기준으로 하여 자녀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이혼을 결정하는 부모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부부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우선 친권자를 지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의에 의해 부부가 이혼 후에도 공동친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다면 공동친권자로서 친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부 또는 모 1인의 단독친권자를 지정한다면 지정된 자가 친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협의에 의해 친권자를 지정하면 민법 제836조의 2 제4항에 의해 이혼시 친권자결정협의서의 제출을 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2항에 의해 법원은 이혼의사 확인절차에서 친권자결정과 관련된 협의를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협의된 사항은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에 따라 협의이혼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비로서 협의에 의한 친권자지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2007년 민법 개정 및 2009년 3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등이 개정되면서, 법률 및 규칙에 의해 부부는 협의 이혼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반드시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친권자지정을 요구함으로써 기존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지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였던 친권의 공백을 방지하여 미성년자의 보호에 기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도 부부 사이에 친권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법원에 의해 친권자가 결정된다.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이 제기되며, 재판상 이혼이 제기되면 법원은 민법 제909조 제5항에 의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친권자결정에서 법원이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원의 강제적 개입에 대해 사적 자치의 영역에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부당할 수도 있지만,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친권의 공백을 법원이 개입함으로써 그 공백을 메워주게 되어 미성년자녀의 보호에 더욱 신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친권자규정이 이혼 후 친권자부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미성년자녀의 보호와 이익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외국인출신 결혼이민자는 2년 동안을 체류비자 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들이 혼인 후 2년 내에 이혼하게 되면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한국인 부 또는 모에게 친권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³⁰⁾ 반면에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외국인출신 결혼이민자인 부 또는 모는 자녀를 한국에 두고 한국 자체를 떠나야 하는 도덕적·인륜적으로 불행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인 부와 외국인출신 모로 구성되어 있는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에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는 경우에 부가 친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부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30)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의 70% 이상이 보모 중 모로 구성되어 있고, 저개발국가 출신으로 경제적으로 열락한 지위에 처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진다.

V. 마치며

다문화가족의 해체시 친권과 양육권의 결정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자녀의 복리이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결정할 때에 고려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구성이 여성결혼이민자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결혼한 전체 결혼건수 중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는 194,085명으로 5.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결혼이민자는 72,110명으로 2.2%를 차지하였다. 즉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 국제결혼의 비율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2배 이상 높다. 둘째로는 그러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저개발국가에서 이주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한국남성과 여성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을 국적별로 분류하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등의 순서로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이 많다. 그중에서도 중국과 베트남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가 84%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다소 뒤처지는 저개발국가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압도적으로 높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는 전체 여성결혼이민자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결혼경로로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경우라는 점이다. 결혼이민자들이 배우자를 만난 방법으로는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만남이 가장 많다. 그러나 결혼이민자들이 배우자를 만난 여러 방법 중에서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경우는 한국에 체류기간이 대단히 짧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이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이들의 가정경제가 혼인 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족의 평균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빈곤층이 대부분이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월평균가구소득이 상당히 열악하다. 다섯째, 여성결혼이민자

는 가정 내의 법적 지위조차 불안하다는 점이다.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체류보장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외국인 신분으로 2년의 체류비자(F2) 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게 된다. 또한 국적취득 요건에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필요로 하여 가정 내에서의 권력관계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종속적인 입장이 되기 쉽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양육자를 부모 중에 모로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³¹⁾ 그러나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다문화가족의 해체될 때에 자녀는 부모 중에 부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민법에도 적합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여성결혼이민자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하락에 더하여 외국인출신이 처한 상황은 그들의 경제적 하락을 한층 더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즉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적 빈곤층에 처하게 되어 자녀의 양육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부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 등을 고려하여 모로 지정하는 것이 자의 복리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반드시 모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모에 대한 다문화교육 등을 통한 한국적응성의 증가 및 취업교육 등을 통한 소득증대를 이루어 우리나라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배려방법으로 재산분할시 모인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더 배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다문화가족이 해체된 경우에 친권자를 누구를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31) 이화숙, 자의 최대의 이익과 현행친권제도(상), 사법행정 제27권 8호, 1986. 8, 65면.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다문화가족이 계속 유지되어 그 자녀들을 부모의 보호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이혼원인 중 배우자를 만난 경로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결혼중개업체에 의하여 배우자를 만났고, 이들의 체류기간의 상당히 짧은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즘 결혼중개업체에 의해 배우자를 만나 혼인한 베트남여성의 불행한 사건이 사회적 문제화된 경우도 있다.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조건만으로 혼인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다문화가족에서 발생하는 이혼원인 중에서 성격차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여, 불행한 이혼을 막고 결혼당사자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문화도 충분한 이해를 돕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곽동헌, 이혼 후의 친자관계 -친권과 양육권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13집(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12.
- 구차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20호, 2007. 8.
- 권정희, 이혼에서 자녀보호를 위한 법적 고찰, 가족법연구 제15권 제1호, 2001. 06.
- 김명숙, 자의 복리와 친권, 자의 권리, 안암법학 제28집, 2009.
- 김승권 외 7인,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김승권 외,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김유경 외,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남인숙·장혼성, 결혼이민여성 가족의 출신국 문화이해, 사회이론(봄/여름), 2009.
- 박선영외 3인,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연구보고서 14, 2008..
- 박영란 외, 여성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3.
- 변화순 외,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복지욕구에 따른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
- 서종남, 결혼이민자 가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42권 제1호, 2010. 3.
- 석재은 외, 취약계층 여성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여성가족부, 2006.
- 석재은 외, 여성의 빈곤실태 분석과 탈빈곤 정책과제 개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양창수·김상용 역, 친권법의 기본문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102호, 1996. 12.
- 오시영, 친족상속법, 학현사, 2006.

이화숙, 자의 최대의 이익과 현행친권제도(상), 사법행정 제27권 8호, 1986. 8.

정혜영, 다문화가족자녀의 권리보호, 안암법학 27호, 2008. 9.

홍춘의, 친자법에 있어서 자의 복리개념, 민사법학 특별호 제36호, 2007. 5.